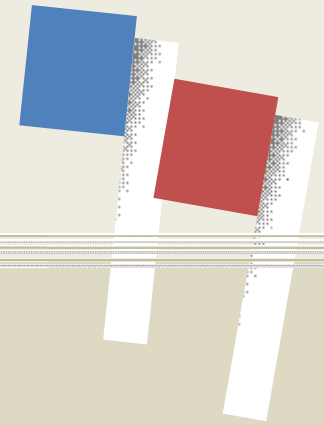


2013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해외 기초연금 제도가 한국과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용

- I.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 II. 한국과 서울 노인문제와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노인문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
금의 현황과 문제점
-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제도와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연구
- IV.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혁의 쟁점과 개선대
안들

I.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 ▶ 급속한 고령화. 노인빈곤의 문제도 점점 심각
-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
- ▶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과 야당 양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을 약속
- ▶ 기초노령연금의 개편방안에서 쟁점은 연금의 급여제도, 관리운영,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도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
- ▶ 이 연구의 목표는 주로 기초연금의 경험을 가진 선진국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주요 쟁점 별로 살펴보는 것임.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기초노령연금의 개편방향과 서울시 기초노령연금의 정책방향을 제시.

II. 한국과 서울의 노인문제와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문제: 한국과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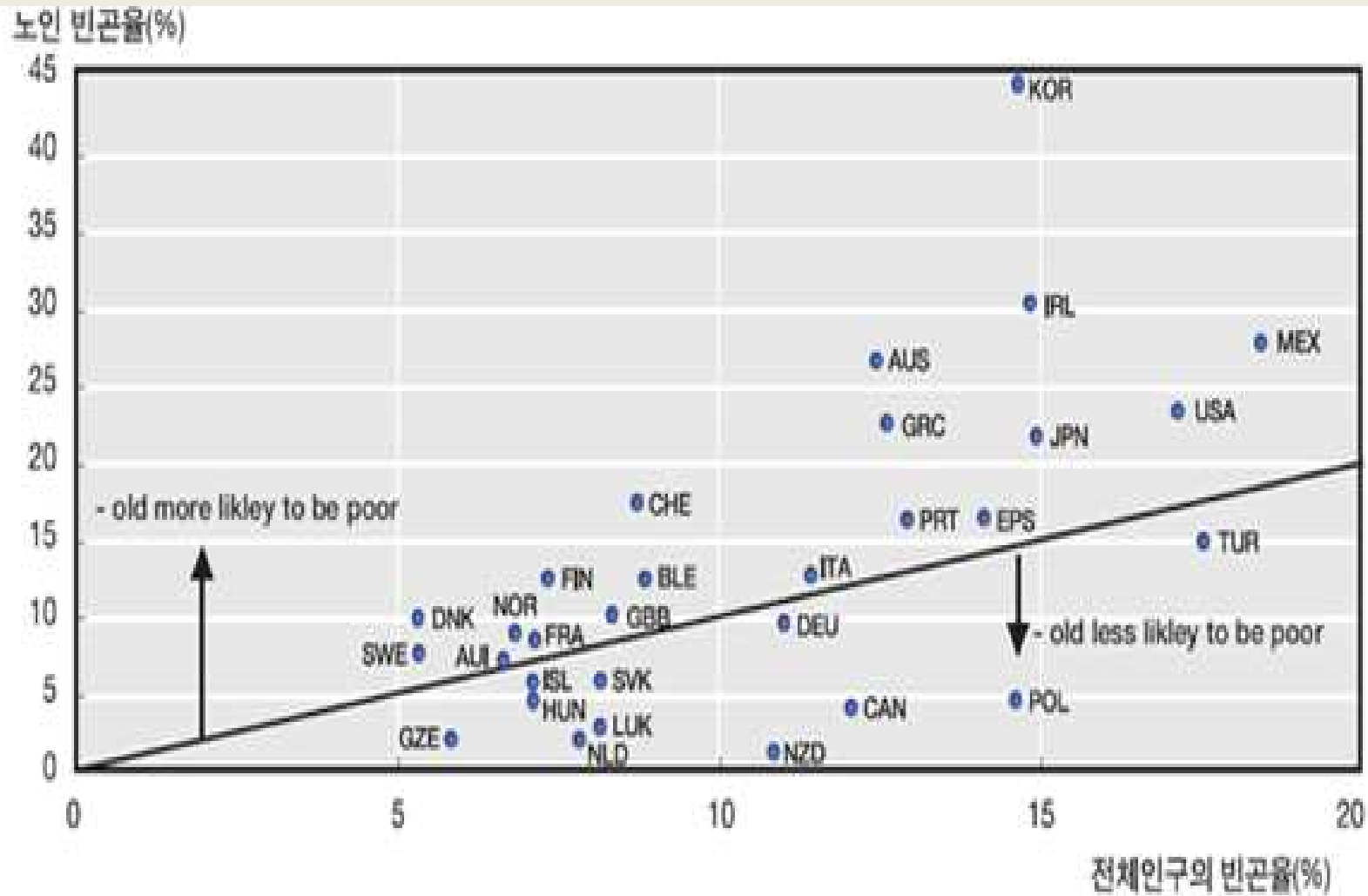
- 노인빈곤과 세대간 불평등

2.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 중심으로

3.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 급여체계, 관리체계, 재원조달

1. 노인문제: 노인빈곤



서울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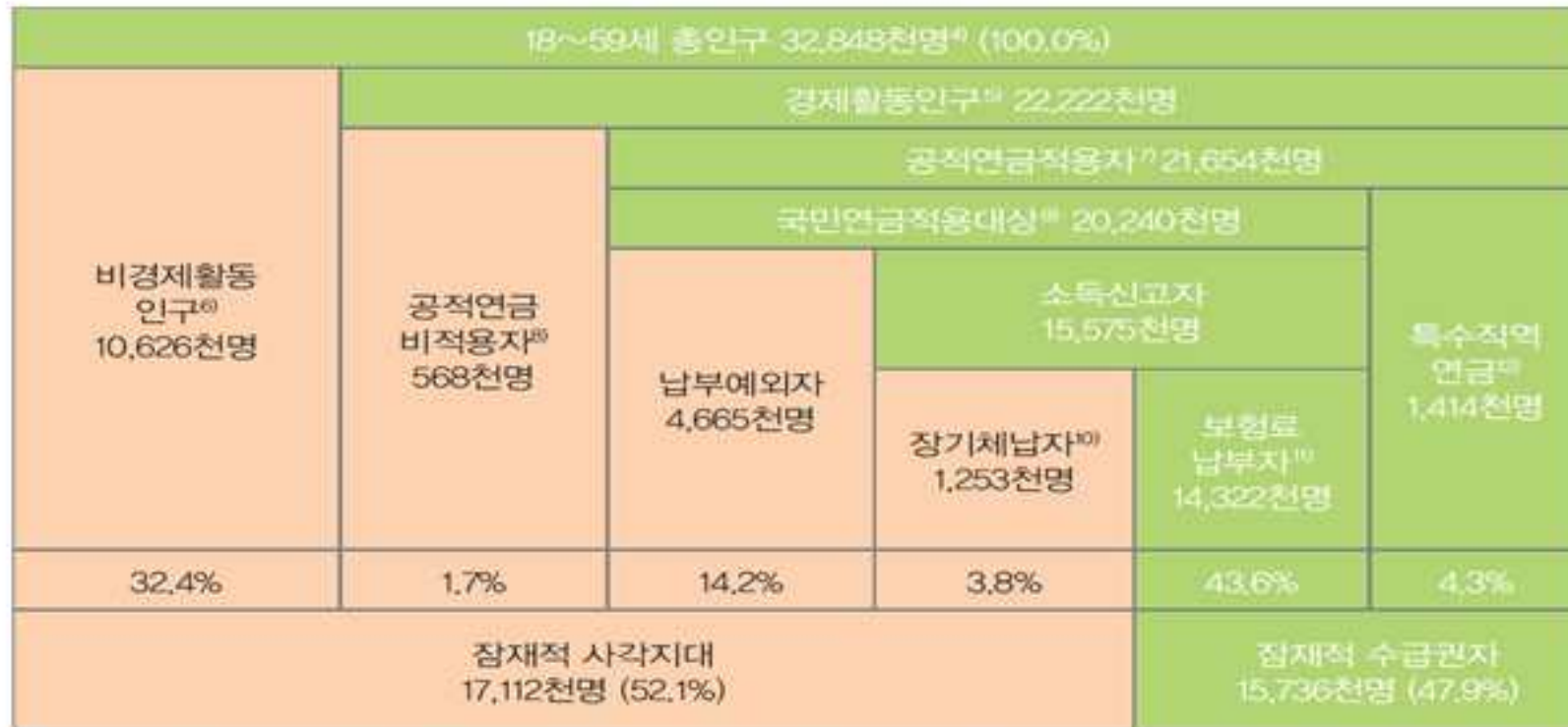
구분		전체		비빈곤		빈곤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대도시	553	100	241	43.6	312	56.4
	전체	553	100	241	43.6	312	56.4
수도권	대도시	150	100	48	32	102	68
	중소도시	451	100	157	34.8	294	65.2
	농촌	105	100	20	19	85	81
	전체	706	100	225	31.9	481	68.1
부산/경남/울산	대도시	264	100	81	30.7	183	69.3
	중소도시	41	100	27	65.9	14	34.1
	농촌	340	100	48	14.1	292	85.9
	전체	645	100	156	24.2	489	75.8
대구/경북	대도시	193	100	58	30.1	135	69.9
	중소도시	80	100	13	16.3	67	83.8
	농촌	360	100	49	13.6	311	86.4
	전체	633	100	120	19	513	81
대전/충남	대도시	85	100	41	48.2	44	51.8
	중소도시	60	100	21	35	39	65
	농촌	160	100	36	22.5	124	77.5
	전체	305	100	98	32.1	207	67.9
강원/충북	중소도시	123	100	34	27.6	89	72.4
	농촌	160	100	40	25	120	75

노인자살율. 전국과 서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특별시	25.4	29.0	48.1	60.6	68.8	64.2	54.4	58.4	57.5	63.3	65.1	64.4
부산광역시	40.0	50.5	49.1	64.6	88.1	83.2	67.9	65.6	64.9	66.3	74.5	67.1
대구광역시	30.4	32.0	42.7	61.0	62.0	65.5	61.8	52.0	60.9	67.8	69.2	67.9
인천광역시	59.6	62.0	79.7	103.4	83.6	107.4	78.1	76.0	82.2	90.1	86.9	82.1
광주광역시	22.5	11.4	27.7	41.3	57.6	53.6	38.0	62.8	56.0	57.7	71.9	65.1
대전광역시	50.2	51.3	66.6	84.9	72.6	97.5	81.7	94.7	64.3	78.8	90.7	75.9
울산광역시	36.7	48.4	47.8	110.3	99.1	92.7	62.1	84.6	76.4	67.0	64.3	61.6
경기도	44.5	63.2	77.2	96.1	92.8	96.9	84.8	83.0	78.8	85.7	91.1	90.5
강원도	50.4	56.2	62.5	111.8	111.7	107.1	102.3	100.5	107.7	101.6	117.9	106.5
충청북도	34.7	50.2	53.5	74.4	91.3	85.1	94.0	90.6	87.7	117.2	91.8	99.8
충청남도	39.1	43.1	45.2	65.3	85.8	103.7	88.9	109.5	97.0	124.4	123.2	127.1
전라북도	27.8	34.2	59.6	66.5	69.3	72.3	66.6	82.5	78.7	91.3	82.9	83.9
전라남도	16.5	13.5	32.0	40.8	48.9	46.5	42.7	50.5	48.3	53.1	60.9	69.4
경상북도	38.7	33.9	52.5	63.2	76.7	73.4	74.0	70.0	62.5	73.9	81.4	71.6
경상남도	38.3	50.1	68.7	73.3	87.1	83.5	90.1	91.8	82.9	75.8	81.4	71.1
제주도	18.9	40.5	29.9	46.7	52.0	58.7	43.7	53.1	52.4	50.4	53.1	76.7
전국	35.5	42	55.8	72.3	79	80.3	72	75.2	71.7	78.8	81.9	79.7

2. 한국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연금사각지대

15~64세 인구: 37,344천명 ('12년 말 기준)



주: 1) 동 산출결과는 납부시점(적용시점)에서의 근로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수급관점에서의 연금사각지대와는 차이점이 있음에 유의

2) 또한 통계청 자료와 국민연금자료 산출기준의 차이로 인해 일부 통계치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예를 들면, 통계청 기준으로 볼 때 경찰자인 협업배우자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적용제외 집단이며, 비경활자 혹은 실업자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통계치 간 단순 합산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3) *주4)~주11) 및 자료는 '일려두기' 참조

서울시 연금사각지대

구분		2010	2011	2012
인구	18-59	6,846,767	6,830,783	6,788,763
경제활동인구	15-64	4,944,000	5,007,000	4,991,000
가입자	총가입자	5,672,819	5,835,946	5,812,644
	납부예외	1,230,343	1,153,205	1,081,094
	징수율	94.23	94.06	93.83
	추정납부	4,186,145	4,404,586	4,439,613
납부율	인구(18-59)	61.1	64.5	65.4
	경제활동인구	84.7	88.0	89.0

국민연금 수급율: 전국과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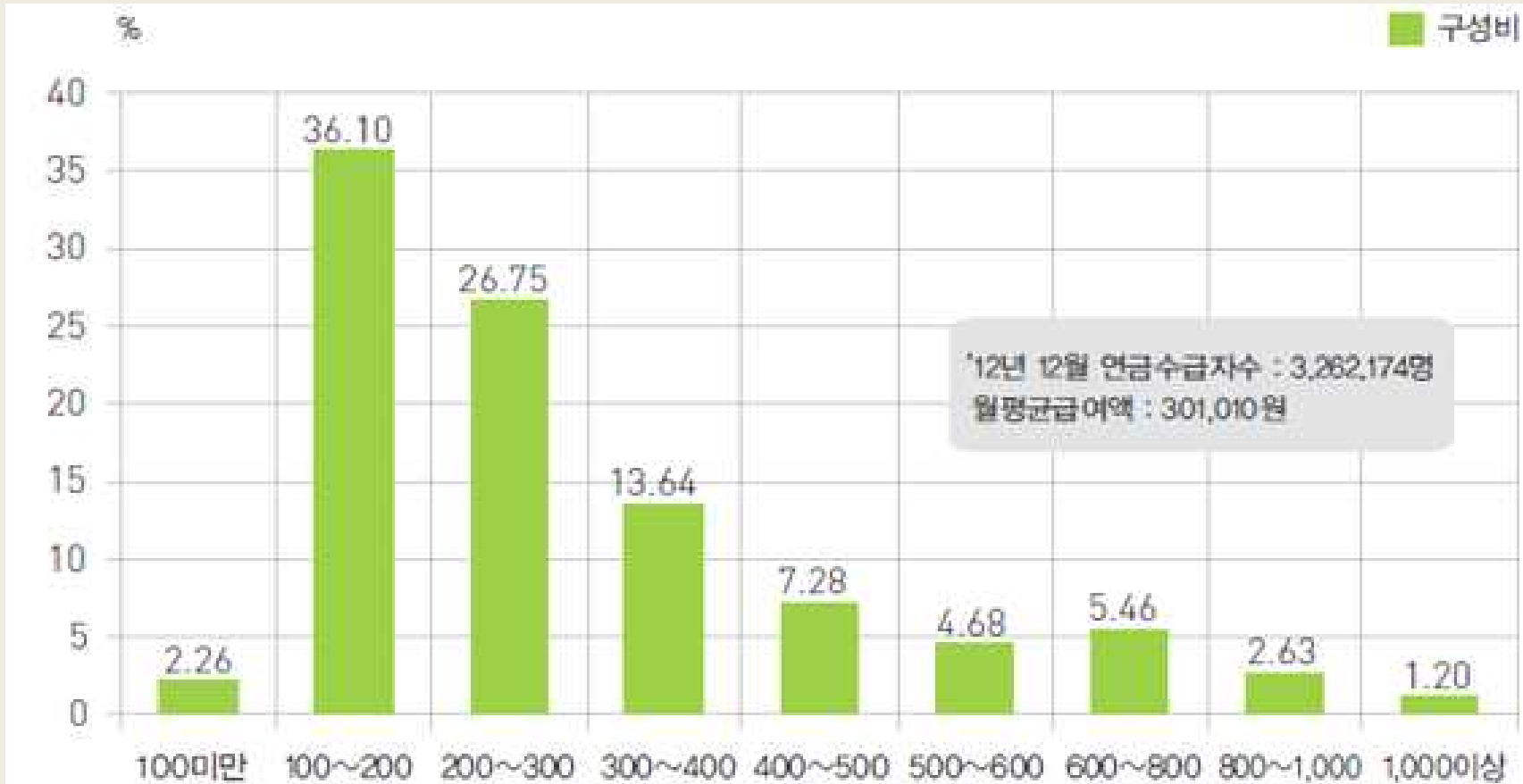
전국 구분	규모	비중
65세 이상 노인 수	5,889,675	100
공적연금 비수급	926,880	15.74%
공적연금 수급률(A+B+C)-D	4,962,795	84.26%
기초노령연금 수급자(A)	3,909,181	66.37%
국민연금 수급자(B)	1,801,849	30.59%
특수직역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 (C)	241,222	4.10%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 수급자(D)	1,013,371	17.21% (전체 노인 대비)
서울 구분	규모	비중
65세 이상 노인 수	1,105,583	100.0%
공적연금 비수급	313,916	28.39%
공적연금 수급률(A+B+C)-D	791,667	71.6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A)	550,248	49.77%
국민연금 수급자(B)	326,598	29.54%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수급자(C)	31,766	2.87%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 수급자(D)	116,945	10.58% (전체 노인 대비)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 전국과 서울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노령연금월액(a)	171,560	188,080	205,380	221,750	244,100	262,960	281,610	308,880
A값(b)	1,497,798	1,556,567	1,618,914	1,676,837	1,750,959	1,791,955	1,824,109	1,891,771
a/b	11.0	11.6	12.2	12.7	13.6	14.7	15.4	16

구분	노령연금		
	수급자수	금액	평균급여액(연)
2005	240,155	523,833,631	2,181
2006	278,127	658,505,581	2,368
2007	325,365	830,793,784	2,553
2008	370,342	1,027,781,168	2,775
2009	410,306	1,254,401,356	3,057
2010	445,628	1,474,159,940	3,308
2011	473,742	1,685,814,681	3,559
2012	522,936	1,974,864,751	3,776

국민연금 급여분포



주: 월평균급여액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월연금액이 반영됨

국민연금 급여수준 전망

연도	소득대체율	연도	소득대체율
2013	19.9%	2040	21.8%
2020	24.8%	2050	20.4%
2030	23.3%	2060	22.3%

은퇴연령

Countries	Male			Femal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Official Age of Retirement	No. of Differenc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Official Age of Retirement	No. of Difference
Korea, South	68.0	60.0	8.0	66.80	60.0	6.8
Japan	69.6	60.0	9.6	65.70	60.0	5.7
Turkey	62.5	60.0	2.5	61.90	58.0	3.9
United States	65.0	65.0	0.0	62.90	65.0	-2.1
Canada	63.1	65.0	-1.9	61.40	65.0	-3.6
Mexico	73.8	65.0	8.8	67.20	65.0	2.2
Sweden	63.5	65.0	-1.5	62.00	65.0	-3.0
Finland	60.8	65.0	-4.2	59.80	65.0	-5.2
Norway	63.7	67.0	-3.3	62.30	67.0	-4.7
Iceland	69.6	67.0	2.6	67.80	67.0	0.8
Denmark	65.3	67.0	-1.7	62.10	67.0	-4.9
UK	63.1	65.0	-1.9	61.20	60.0	1.2
Ireland	65.2	66.0	-0.8	66.20	66.0	0.2
Germany	60.9	65.0	-4.1	60.20	65.0	-4.8
Austria	59.6	65.0	-5.4	58.90	60.0	-1.1
Switzerland	66.6	65.0	1.6	63.20	63.0	0.2
Belgium	58.5	65.0	-6.5	56.80	62.0	-5.2
Luxemburg	59.8	65.0	-5.2	59.80	65.0	-5.2
France	59.3	60.0	-0.7	59.40	60.0	-0.6
Netherlands	61.0	65.0	-4.0	59.10	65.0	-5.9
Czech	62.0	61.2	0.8	58.30	59.3	-1.0
Hungary	57.8	62.0	-4.2	56.00	58.0	-2.0
Poland	60.9	65.0	-4.1	58.80	60.0	-1.2
Greece	62.4	58.0	4.4	60.90	58.0	2.9
Italy	61.2	65.0	-3.8	60.50	60.0	0.5
Portugal	65.8	65.0	0.8	63.50	65.0	-1.5
Spain	61.6	65.0	-3.4	61.30	65.0	-3.7
Australia	63.2	65.0	-1.8	60.60	62.0	-1.4
New Zealand	64.3	65.0	-0.7	61.30	65.0	-3.7

연금제도의 양극화

<표> 소득구간별 전연금 (국민+퇴직+개인) 미가입율

소득구간	2010	2013
연소득 3000만원 미만	13.2	41.2
연소득 3000~5000만원	15.9	14.0
연소득 5000만원 초과	9.1	9.0

소득수준별 은퇴소득 중 연금비율 예상



3.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급여체계 수급율: 국민연금 수급과 병행?

구분	전국	서울	광역시	기타지역
65세이상 노인인구	5,980,060	1,105,583	1,356,857	3,517,620
수급자	3,933,095	550,248	930,748	2,452,099
수급률	65.8	49.8	68.6	69.7

구분	계	하위 70%		상위 30%	
		비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인원(만명)	1762	292	942	444	85
구성(%)	100	16.6	53.5	25.2	4.8

<표 > 노인인구의 소득구간별 분포(20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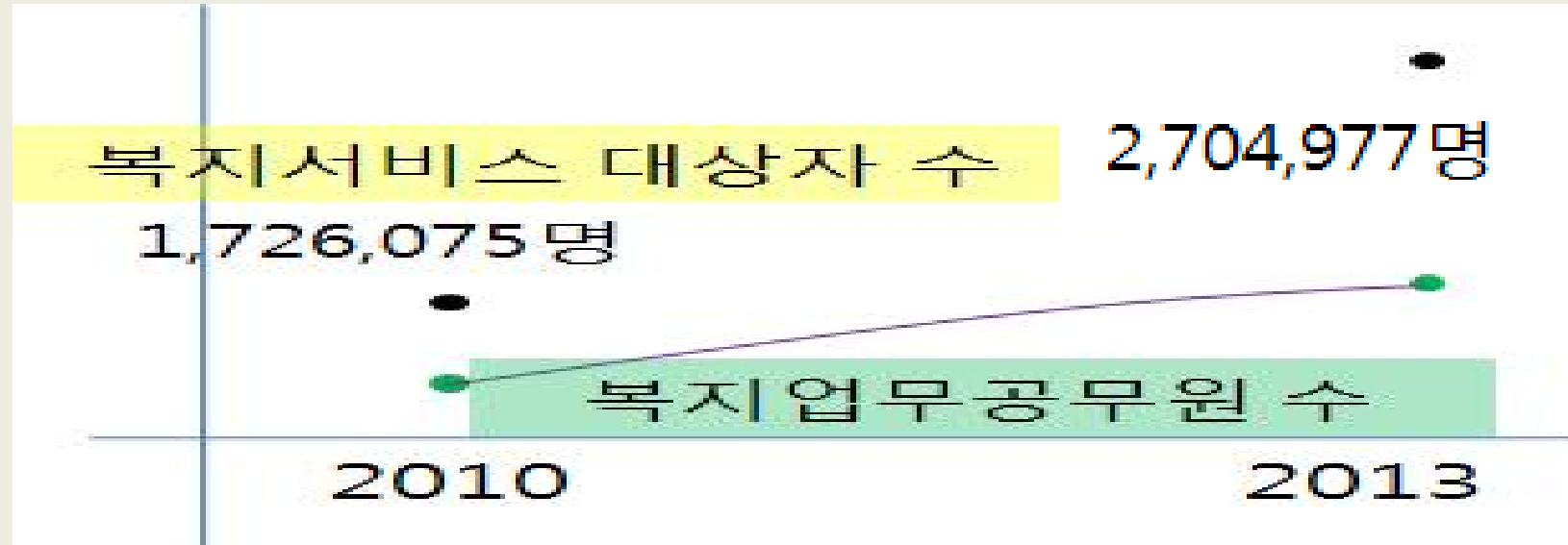
급여수준의 현실성

구분	연평균급여액	1인당 개인소득	소득대체율
계	990	14,472	6.8
서울	994	16,840	5.9
부산	990	14,844	6.7
대구	992	14,142	7
인천	986	13,114	7.5
광주	987	13,744	7.2
대전	987	14,532	6.8
울산	998	18,543	5.4
경기	988	14,199	7
강원	989	12,525	7.9
충북	986	13,080	7.5
충남	985	12,743	7.7
전북	989	13,293	7.4
전남	991	12,262	8.1
경북	991	13,157	7.5
경남	996	13,730	7.3
제주	987	14,241	6.9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시군구명	인원	근무일수	총 근무시간	초과근무 시간	총 실제 근무시간	1일평균 실제근무시간
서울특별시 (6개구)	369 (61.5)	253	900,866.5 (150,147.8)	116,259.8 (19,376.6)	1,017,146.3 (169,524.4)	9.3
부산광역시 (4개구군)	107 (26.8)	253	233,921.7 (58,480.4)	13,738.1 (3,434.5)	247,659.8 (61,915.0)	7.8
대구광역시 (3개구군)	136 (45.3)	253	318,241.0 (106,080.3)	24,352.2 (8,117.4)	342,593.2 (114,197.7)	8.5
인천광역시 (2개구)	111 (55.5)	253	227,438.2 (113,719.1)	10,811.2 (5,405.6)	238,249.4 (119,124.7)	7.2
대전광역시 (1개구)	33 (33.0)	253	76,147.0 (76,147.0)	2,758.8 (2,758.8)	78,905.8 (78,905.8)	8.0
울산광역시 (2개구)	39 (19.5)	253	87,024.9 (43,512.5)	8,947.5 (4,473.8)	95,972.4 (47,986.2)	8.3
경기도 (8개시군)	437 (56.4)	253	1,007,498.0 (125,937.2)	92,372.4 (11,546.6)	1,099,870.4 (137,483.8)	8.5
강원도 (4개시군)	124 (31.0)	253	268,467.9 (67,177.0)	24,830.9 (6,207.7)	293,298.8 (73,324.7)	7.9
충청북도 (1개군)	42 (42.0)	253	104,344.3 (104,344.3)	13,412.9 (13,412.9)	117,757.2 (117,757.2)	9.4
충청남도 (2개시군)	94 (47.0)	253	228,644.2 (114,322.1)	41,400.7 (20,700.4)	270,044.9 (135,022.4)	9.7
전라북도 (4개시군)	235 (58.8)	253	573,384.0 (143,346.0)	65,567.4 (16,391.9)	638,951.4 (159,737.9)	9.1
전라남도 (3개군)	106 (35.3)	253	245,920.8 (81,973.6)	26,172.9 (8,724.3)	272,083.2 (90,697.9)	8.6
경상북도 (9개시군)	363 (40.3)	253	794,756.1 (88,306.2)	133,327.1 (14,814.1)	928,083.2 (103,120.4)	8.6
경상남도 (4개시군)	282 (70.5)	253	654,173.2 (163,543.3)	111,189.2 (27,797.3)	765,362.4 (191,340.6)	9.1
합계	2,478	253	5,654,397.8	682,898.5	6,337,296.3	8.6

복지수요 및 복지공무원 증가 추이



<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수요 및 비중

구분	총계	기초생활	영유아보육	기초노령	한부모가족	장애인	의료급여	기타
서비스대상	2,704,977	202,680	1,337,000	605,687	90,929	429,639	259,604	96,201
비중	100.0	7.5	49.4	22.4	3.4	15.9	9.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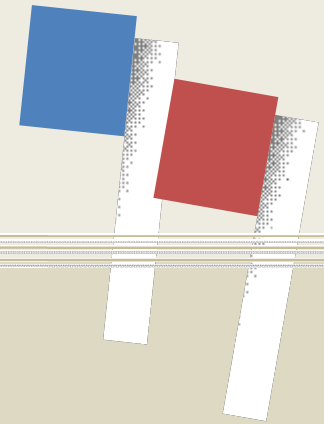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조달의 현황과 문제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노인인구비	서울	8.54			10.4	11.1
	전국	10.32			11.5	12.0
수급자수	서울	373,766	498,038	514,416	528,454	550,248
	전국	2,894,649	3,630,147	3,727,940	3,818,186	3,933,095
수급률	서울	42	53.2	51.3	50.6	49.8
	전국	57.2	68.9	67.7	67	65.8
수급액	서울	28,599	466,168	505,985	525,355	560,188
	전국	2,224,083	3,427,930	3,654,371	3,780,518	4,007,671
국비	서울	17,150	280,330	335,232	358,689	382,470
	전국	158,878.1	247,442.2	267,925.5	2,811,341	2,985,694
지방비	서울	11,449	185,838	170,753	166,666	177,718
	전국	635,302	953,508	975,116	969,177	1,021,977
국고보조율	서울	60.0	60.1	66.3	68.3	68.3
	전국	71.4	72.2	73.3	74.4	74.5

기초자치 단체와 기초노령연금 재정

구분	65세 이상 노령인구수	수급자수	수급률	평균연금액 (원)	총급여액 (백만원)	국고보조율	시구비 보조율
서울특별시	1,105,583	550,248	49.8	87,018	47,881		
종로구	23,730	10,540	44.4	87,416	921	70%	50:50
중구	18,690	9,221	49.3	87,695	807	50%	50:50
용산구	32,786	12,572	38.3	87,770	1,103	50%	50:50
성동구	34,056	15,815	46.4	87,051	1,377	70%	50:50
광진구	35,539	15,602	43.9	87,406	1,364	70%	50:50
동대문구	46,625	24,647	52.9	86,829	2,140	70%	55:45
중랑구	46,402	28,501	61.4	86,846	2,475	70%	55:45
성북구	58,000	30,697	52.9	86,508	2,656	70%	55:45
강북구	46,147	28,547	61.9	86,574	2,471	70%	55:45
도봉구	42,230	24,654	58.4	86,348	2,129	70%	50:50
노원구	61,150	38,263	62.6	86,983	3,328	70%	50:50
은평구	60,649	35,192	58	86,586	3,047	70%	55:45
서대문구	41,756	21,956	52.6	86,459	1,898	70%	50:50
마포구	44,027	20,956	47.6	86,692	1,817	70%	55:45
양천구	43,392	24,152	55.7	86,951	2,100	70%	50:50
강서구	55,641	32,114	57.7	87,330	2,804	70%	50:50
구로구	44,579	23,392	52.5	86,490	2,023	70%	50:50
금천구	26,476	15,260	57.6	87,201	1,331	70%	50:50
영등포구	45,417	19,306	42.5	87,159	1,683	70%	50:50
동작구	47,007	21,328	45.4	86,694	1,849	70%	55:45
관악구	56,238	28,829	51.3	86,616	2,497	70%	50:50
서초구	41,649	10,271	24.7	88,629	910	50%	50:50
강남구	50,206	14,466	28.8	89,157	1,290	50%	50:50
송파구	58,341	22,272	38.2	87,908	1,958	70%	50:50
강동구	44,850	21,695	48.4	87,616	1,901	70%	50:50

Ⅲ.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1. 기초연금의 유형

○ 기초연금 자원조달방식에 의한 분류

- **조세방식**: 재원이 전적으로 국고에서 조달, 급여는 기본적으로 거주요건에 의해 결정.
- **보험료방식**: 재원의 대부분이 보험료나 기여금으로 조달, 급여는 기여요건에 의해 결정.

○ 급여수급조건에 따른 분류

- **사회부조식**: 거주기간 외 연금, 소득 또는 자산수준 등에 의해 결정.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 **사회보험식**: 기여기간에 의거하여 결정. 영국,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등.
- **사회수당식**: 거주여부 또는 거주기간에 의해서 결정.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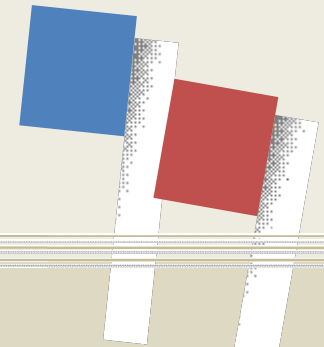
2. 공통적인 3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캐나다** 노령소득보장체계는 노령보장제도, 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인 CPP(캐나다 연금제도)와 QPP(퀘벡 연금제도), 자발적 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등록제 연금제도와 등록제개인퇴직저축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3층 체계로 구분.
- **뉴질랜드** 역시 1층에는 기초연금인 New Zealand superannuation과 사회부조제도, 2층에는 KiwiSaver라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다양한 퇴직연금플랜이 존재하고, 3층 제도에는 개인저축.
- **호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다른 국가와 유사하게 3층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1층은 공공부조형 공적연금제도인 노령연금(Age pension), 2층은 강제민간퇴직저축인 강제 기업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3층은 자발적인 개인퇴직저축으로 구성.
- **일본**도 1985년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2층의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 등, 3층의 기업연금 및 직역연금으로 3층 구조의 연금체계를 구축.

Ⅲ.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3. 엄격해지는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 캐나다 자격요건

- 먼저 자격요건을 보면, 캐나다의 OAS는 급여시점인 65세를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18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자격.
- 하지만 캐나다 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수급자격. 이때 근로여부가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그러나 2012년 OSA 수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계획.
- 캐나다는 OAS 및 GIS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노인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 비결은 보편적 수당 형태의 OAS와 이를 보충해주는 GIS가 일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적절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3. 엄격해지는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 뉴질랜드 자격요건

-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1930년대 후반에 이미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한 국가로 널리 알려짐.
- 그러나 뉴질랜드 모델로 불리는 복지축소적 개혁으로 인해 기초연금인 NZS를 제외하면 복지지체국에 속할 정도로 복지발전이 지체.
- 뉴질랜드는 강제기여적 공적연금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특이한 국가.
- 그럼에도 NZS는 뉴질랜드 소득보장의 핵심제도로써 65세 이상의 일정한 거주요건을 갖춘 뉴질랜드 국민 모두에게 수급권을 제공.
- 거주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 20세가 되는 해부터 최소한 10년을 거주해야 하고, 50세 이후에는 최소한 5년을 국내에 거주.
- 뉴질랜드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려던 계획
1992년에서 2001년 사이 65세로 상향조정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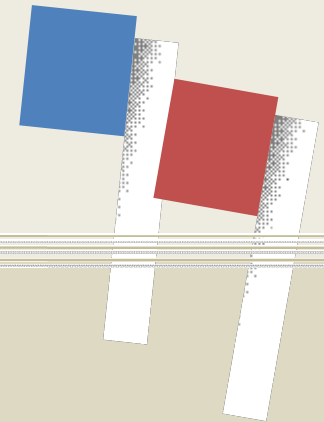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3. 엄격해지는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 호주 자격요건

- 호주는 공공부조방식의 기초노령연금과 기업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
- 특히 다른 국가들처럼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호주에서 특이한 점은 2층의 강제적 민간기업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 1층의 노령연금(Age Pension)은 1908년에 시작되어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유지되는 공적부조형 연금제도. 호주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으로 10년 이상의 거주, 소득조사 및 자산조사가 전제.
- 현재 노령연금 연령기준은 남성 65세, 여성 64세이나 2014년까지 여성도 남성처럼 65세로 늘어나고 2023년까지 남녀 모두 67세로 높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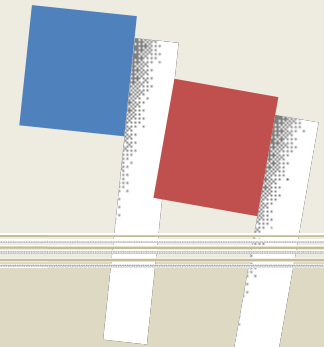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3. 엄격해지는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 일본 자격요건

- 일본에서도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기초연금을 수급. 다만 보험료납부기간, 보험료면제기간, 합산대상기간을 **합계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가 65세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지급.**
- 일본에서 면제제도를 다단계로 적용하는 이유는 정액 보험료 방식의 기초노령연금을 비례보험료, 비례급여 방식에 가깝게 접근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
- 국민연금제도의 피보험자가 너무나 다양하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액기여와 정액급여방식을 통해 소득파악 문제를 우회. 그 대신 각종 면제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불비례적인 정액기여 및 정액급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
- 노령기초연금의 **원칙적인 지급개시연령은 65세지만, 60-64세에 받을수록 감액되도록 조기수급 감액연금제를 설정. 반대로 65세 이후 받을수록 연금이 증액되도록 지연수급(deferral benefit) 증액연금제를 설정.**자연스럽게 수급연령이 높아지도록 유도.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3. 엄격해지는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 캐나다 급여체계

- 급여체계에서, 캐나다의 OAS 급여액은 **캐나다 거주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이 **40년 이상인 자에게는 완전연금**이 정액지급. 40년 미만인 경우(부분연금)에는 40년에 못미치는 거주년수에 따라 완전연금액의 1/40 씩 감액하여 지급.
- 2012년 현재 월 최대급여액은 \$ 544.98이며, 연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인 Consumer Price Index로 측정한 생계비 인상에 따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조정.
- OAS 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수급자는 초과소득의 15% 비율로 감액(claw back)**하여 지급(OAS Recovery Tax).
- 도입당시 기준소득액은 50,000 달러 였으나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51,765 달러 이상 소득있는 노인들의 급여는 1달러당 15%의 급여액을 소득신고시 반환. 89,000 달러 소득의 경우 모든 급여 사라지도록 설계.
- **2012년의 기준소득은 \$69,562**이며, \$112,966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자의 경우 OAS 급여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음.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3. 엄격해지는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 뉴질랜드 급여체계

- 뉴질랜드의 NZ Superannuation은 65세 이상 국민의 94%가 이를 수급하는 것으로 보고. 연금수급액은 거주요건과 부부, 독신미혼, 동거미혼자에 따라 다양.
- 부부의 경우 65세가 되면 세후소득 평균액의 최소 66%, 독신미혼자의 경우 부부 급여의 65% 수준으로 지급된다. NZS는 특별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크도록 설계.
- 가령 은퇴 전 평균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의 소득대체율은 38.1%에 불과하지만, 은퇴 전 평균소득의 50% 소득에 머물렀던 사람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77.5%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
- 노동당은 1985년 노령연금 재정부담 줄이고자 20%의 노령연금 부가세(surtax)를 도입 시도, 국민당도 부부합산 소득 2,740 달러, 독신소득 17,219 달러 경우 급여 전액 환수정책. 그러나 1998년 노령연금 부가세는 폐지.
- 한편 NZS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 조정후 연금액은 부부의 경우 세후소득 평균의 65%에서 72.5% 사이에서 결정. 이는 부부 연금수급액을 세후소득의 평균액 대비 2/3, 즉 66%선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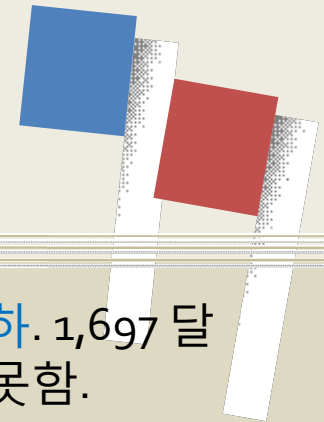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3. 엄격해지는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 호주 급여체계

- 2012년 11월 독신이 완전연금을 받으려면 2주당 소득이 152 달러 이하. 1,697 달러 초과시 받지 못함. 부부는 268달러 이하. 2,597 달러 초과시 받지 못함.
- 자가를 소유한 1인가구(독신)가 완전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이 192,500 달러 이하. 707,750 달러 초과시 받지 못함. 부부는 273,000 달러 이하. 1,050,000 달러 초과시 받지 못함. 이 기준을 넘어서면 1,000 달러당 급여가 1.5 달러씩 감액.
- 호주의 노령연금(Age Pension)은 부부의 경우 2012년 독신 수급자의 완전연금액은 712달러(2주 기준), 부부의 완전연금 합산액은 1,073달러.
- 또한 호주 노령연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평균소득과 물가에 연동.그러나 2009년 개혁을 통해 2009년 말부터 생계비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노령연금 급여 수준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와 연금수급자 생계비지수 반영.
- 2010년부터 독신가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기존의 남성 평균소득 25%에서 28%로 상향조정하였고, 부부의 경우에는 42%로 역시 상향조정.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3.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 일본 급여체계

-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방식이기 때문에 정액보험료 납부기간과 보험료 등을 고려한 복잡한 산식에 의해 결정.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평균월액은 1980년 22,399엔이 2007년 48,057엔으로 2배 이상 상승.
-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2038년경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보험료를 25,900엔과 26%로 상향조정 전망.
- 매크로 슬라이드제 도입: 연금액의 연동기준을 물가상승률에서 경제 및 인구변동(근로인구 감소율 및 기대여명 상승률)을 차감한 물가상승률로 조정하여 급여지출을 억제. 이에 따라 현재의 급여수준인 59.3%는 장기적으로 50.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사회보험을 통한 빈곤 감소에 기초연금의 기여도는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기여기간이 짧거나 아예 기여하지 않은 고령자의 연금액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회보험 성격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



Ⅲ.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4. 단일화된 비용효과적 관리체계

○ 캐나다

- 캐나다의 OAS와 GIS를 포함한 노령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은 인적자원사회개발부 (Human Resource & Social Development Canada:HRSDC)에서 담당.
- 2005년부터 보다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성을 위해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발족. 서비스캐나다는 50여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하나의 지점에서 전달하는 서비스체계로서 CPP와 OAD 급여지급까지 가능.
- 급여지급율에 따른 급여는 기초연금 급여와 소득보충급여가 합산되어 지급되며, 매월 마지막 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거나 우편을 통해 지급.
- GIS 급여 신청은 OAS 급여지급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노령보장 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캐나다 HRSDC의 전국 12개 지점으로 송부. OAS와 GIS의 관리비용은 매우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연금수급자 1인당 행정비용은 1992년 27.66 달러, 2000년 24.06 달러, 2006년에는 20.44 달러로 지속적인 감소추세. 액수로는 2003년 97 백만 달러, 2006년 역시 97 백만 달러, 2013년 151 백만 달러.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4. 단일화된 비용효과적 관리체계

○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NZ Superannuation은 **사회개발성**에서 담당. 사회개발성은 노령자, 어린이, 청년, 근로활동인구,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 NZ Superannuation은 조세로 운영되므로 사회개발성 이외에도 재무성에서도 영향력을 행사. 특히 뉴질랜드 기초연금 및 은퇴소득법은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ttee)**로 하여금 3년마다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도록 요구.
- 뉴질랜드 은퇴위원회는 1993년에 설립된 독립된 기구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재무적인 노후준비를 하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

○ 호주

- 호주는 Age Pension을 포함한 복지급여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위해 1997년 **센터링크(centerlink)**를 설립.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4. 단일화된 비용효과적 관리체계

- 현재 센터링크는 연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원스탑 서비스의 역할을 담당.
- 센터링크가 설립된 1997년 이전에는 사회보장부 하의 하부조직(20개소의 광역사무소, 252개의 지방사무소)이 기초연금 제도를 관리운영.
- 그러나 현재는 휴먼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소속된 센터링크가 전국에 걸쳐 27,000 명의 직원과 1,000여개소의 서비스전달센터를 갖추고 650만명에게 급여를 지급.
- 호주의 복지급여가 대부분 공공부조방식이므로 전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모든 정보와 거주상태, 가족관계 등의 개인 및 가구 정보가 이 센터링크로 수집되어 집중 관리.
- 이밖에 센터링크는 노령연금 정책에 책임을 지는 가족, 지역, 사회 서비스부를 비롯하여 교육, 과학, 훈련부, 고용, 노사관계부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현금 및 서비스 전달 관리업무를 수행.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4. 단일화된 비용효과적 관리체계

○ 일본

- 일본의 기초연금은 **후생노동성**이 관장. 후생노동성은 국민연금제도와 후생연금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기관을 지도·감독.
- 후생노동성의 연금국에서 후생노동성 소관의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 실질적인 연금업무는 한국과 유사하게 후생노동성 산하 **사회보험청(중앙 관리조직)**과 **사회보험사무소(지방조직)**가 수행.
- 중앙 실무관리조직인 사회보험청은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선원보험, 정부관장 건강보험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회보험업무센터(사회보험 관련 각종 기록 전산관리)와 사회보험사무소를 감독.
- 사회보험사무소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선원보험, 정부관장 건강보험의 전반적 업무(자격, 부과징수, 급여업무)를 담당.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5. 중앙정부의 일반재정을 통한 기초연금 재정 조달

○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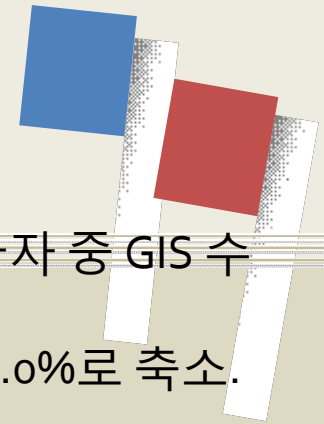
- 캐나다의 OAS 수급자 규모는 2011년 약 476만 명에 달하며, OAS 수급자 중 GIS 수급자 비중은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여 81년 52.9%에서 2011년 34.0%로 축소.

- 캐나다 노령보장제도는 그 급여수준과 포괄범위에도 불구하고, 지출수준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님. 2013년 현재 OAS 수급자는 약 530만 명이며, 지출액은 330억 달러. 이는 GDP 대비 2.47%에 해당.

- 향후 2020년에 수급자는 680만 명, 지출액은 490억 달러, GDP 대비 2.77%, 2030년에는 수급자가 930만명, 지출액이 840억 달러, GDP 대비 3.16%로 증가될 전망.

- 그러나 2012년 캐나다 정부는 OAS 제도의 수급연령과 GIS 연령이 2023년부터 6년 동안에 걸쳐 65세로부터 67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이어서 수급자와 지출액은 줄어들 전망. 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2030년에 수급자는 830만 명, 지출액은 750억 달러, GDP 대비 2.84%, 2040년에는 수급자가 960만명, 지출액이 1,088억 달러, GDP 대비 2.71%로 전망.

- 이 지출액은 모두 캐나다 연방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운영.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5. 중앙정부의 일반재정을 통한 기초연금 재정 조달

○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NZ Superannuation 역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여금이 필요 없**
이 정부재정으로 유지되는 부과방식. 뉴질랜드는 15%에서 39%에 이르는 최고세율의 소득세와 12.5%인 판매세에서 NZS의 재원을 조달.
- OECD는 NZ Superannuation의 비용이 2012년에 GDP 대비 4.6%라고 보고하지만, NZ Superannuation의 일부가 소득세와 GST 형태로 다시 정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4%**수준.
- 2060년에 NZS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향후 급작스런 연금지급액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 이미 비상기금인 NZ Superannuation Fund**를 설립.
- NZ Superannuation Fund는 향후 공적연금의 지출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설치한 비상준비금. 정부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투자기금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관리는 Guardian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라는 독립된 기관이 운영.
- 이 기금의 투자를 통해 얻어진 투자이익은 미래 NZS의 비용에 대한 조세부담을 줄이는데 사용.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5. 중앙정부의 일반재정을 통한 기초연금 재정 조달

○ 호주

- 호주의 Age Pension 역시 캐나다,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100% 국고(일반조세)로 지원. 호주의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노령연금을 포함하여 다른 부가급여도 모두 연방정부가 일반조세로 부담.
- 2007년 현재 호주의 노령연금지출은 GDP 대비 3.4%로 OECD 평균인 7.0%에 비해 낮은 편. 1990~2007년 동안의 변화율도 11.2%로 OECD 평균인 14.5%에 비해 낮은 편.
- 2007년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도 10.1%로 OECD 평균인 16.5%에 비해 낮음. 호주의 노령연금지출이 GDP 대비 비중과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호주의 인구고령화가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해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
- 이러한 추세는 2050년까지 노령연금지출을 전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OECD 평균보다 더디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호주의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비중이 2010년 3.6%에서 2050년 4.9%로 늘어날 전망이다에 대한 우려는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음.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5. 중앙정부의 일반재정을 통한 기초연금 재정 조달


○ 일본

- 호주와 반대로 세계 최고령 사회인 일본은 고령화율 만큼이나 기초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 추세.
- 일본은 위의 3개국과 다르게 보험료로 기초연금 재정에 기여하지만 보험료를 13,300엔에서 16,900엔(2017년)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역시 기존의 1/3에서 2009년까지 1/2로 확대하고, 연금 급여에 대한 과세도 강화 조치.
- 2004 개혁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계를 소득비례연금으로 통합 일원화하되, 그 보완대책으로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을 주장. 노동조합은 기초연금 부분을 조세로 조달하는 개편안을 지지.
- 2004 연금개혁은 일본의 연금정책의 초점이 이제 더 이상 적정 급여수준의 보장이 아니라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보험료의 유지'임을 천명한 점에서 전통적인 연금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을 보여주고 있음.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6. 해외사례 함의

- 
- **첫째**, 기초연금의 재정은 기초연금의 제도취지, 노인 인구의 급증, 경제변화의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점.
 - 일본을 제외한 기초연금 운영 국가들은 처음부터 일반예산으로 기초연금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보험료에 기반한 기초연금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현실과 차이가 존재. 따라서 **즉각적인 중앙정부로의 재정부담 이전 혹은 단계적 이전을 검토**해야 함.
 - **둘째**, 기초연금의 관리를 **통합하여 단일하게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특히 기초연금 급여와 자격요건을 다른 공적연금이나 자산조사 및 소득조사와 연계시킬 경우에 더욱 중앙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반대로 지방정부가 모두 기초연금 관리를 맡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행정적 관리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간, 정부단위간 많은 차이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

Ⅲ.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6. 해외사례 함의

- 따라서 현재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사무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독립된 공적 기관이나 중앙정부로 이전함으로써 균일하고 비용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
- 셋째, 기초연금의 자격과 급여에 있어서 인구 및 경제변화에 재정을 신속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물가 혹은 임금 인상률을 연계시키는 자동재정안정장치와 일정이상 소득액을 가진 급여자에 대해 기초연금 부가세(surtax)를 통해 연금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해외 사례는 기초연금 시행 국가들이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IV.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혁의 쟁점과 개선대안들

1. 최근 기초노령연금 개혁논의 경과
2.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
3. 정부안을 둘러싼 주요쟁점
4. 서울시 입장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의 보완
대책 검토

1. 최근 기초노령연금 개혁논의 경과

- 논의의 배경
- ☞ 기초노령연금의 역할: 선별적 부조제도 vs 보편적 기초연금
- 대선 공약
- ☞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약 20만원) 인상
- 인수위 행복연금안
- ☞ 소득하위 70%와 30% 차등: 14~20만원, 4~10만원
- ☞ 국민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차등: 14-20만원

□ 행복연금위원회 대안

	대상자	급여액	재정소요(조원)	
			14~17	2040
1안 (국민연금연계안)	70%	국민연금 A급여에 따라 차등	36.1	68.4
2안 (소득인정액 연계안)	70%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34.2	88.6
3안 (균등지급안)	80%	20만원 정액 균등 지급	48.7	129.1

-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100% 노인이 아니라 70~80%로 제한
- 3안을 제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이나 소득인정액을 기준 등 어떤 식으로든 차등

2.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

□ 정부입법예고안

인수위안	구분	최종정부안
노인의 100%	지급대상	노인의 70%
4~20만원 • 70% 지급대상으로 기준으로 볼 때 14~20만원	지급수준	10~20만원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등기준	국민연금 A값(가입기간 역비례)

- 기초연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 다만, 5년마다 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재조정
- 기초노령연금 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

정부안: 재정

	2014-2017	2020	2040
정부안(70%)	39.6	17.2(0.8; 2.5)	99.8(1.9; 6.0)
인수위안(100%)	44.3	19.1(0.9; 2.5)	116.6(2.2; 6.3)
20만원 전액(70%)	42.9	18.5(0.9; 2.5)	271.2(2.1; 6.2)
소득차등지급 (70%)	34.2	14.5(0.7; 2.3)	212.7(1.7; 5.8)
최저생계비 150%	41.1	16.4(0.7; 2.3)	65.7(1.3; 5.4)

3. 정부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 **공약파기 논란**
- **장기가입 저해**
- ☞ **현 30세 1. 국민연금에 미가입, 월소득 100만원으로 2.국민연금에 11년, 3. 국민연금에 20년, 4.국민연금에 30년 가입, 20년 동안 수급**

구분	11년	20년	30년
낸돈(A)	11,880	21,600	32,400
받는 돈(B)	92,011	114,602	136,615
수익비(B/A)	7.75	5.31	4.22

□ 청장년층의 손해

구분	55세	45세	35세	25세
기초연금액(원)	121,507	130,667	144,400	144,807

□ 재원조달과 관리통합

4. 서울시 입장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의 보완대책 검토: 급여

구분	장점	단점
균등과 비례부분 비중조정	어느 것이든 정부안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 가능. 다만, 마지막 안은 근본적 개선보다는 임시방편적 대책	국민연금 개혁 부담, 두 제도 모두 재정 부담 증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보완책 필요
수정 인수위안		재정부담이 가장 적어 이상적이기는 하나 돌이키기에는 한계
연계계수의 조정 (2/3 → 1/2)		사회적 합의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재정부담 증가 감수 불가피
지역별 급여차등	지역간 급여 형평성	보편적 수당으로 기초연금의 성격에 맞지 않음 서울시민 복지기본선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4. 서울시 입장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의 보완대책 검토: 자원분담

□ 정부안 문제

- 2014~2017년까지 총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39.6조원(연평균 9.9조원)이며, 현행 기초노령연금 유지 시(26.9조원, 연평균 6.7조원)에 비해 12.7조원(연평균 3.17조원)이 더 소요
- 📖 국고와 지자체가 74.5:25.5로 분담: 국고와 지자체가 향후 4년간 각각 총 29.5조원과 10.1조원을 부담.
- 📖 추가부담분: 국고 9.5조원, 지방비 3.6조원을 추가. 국고는 연 2.4조원, 지자체는 연 0.8조원을 추가로 자원
- 📖 2013년 기준 지자체가 약 연 1.1조원을 부담, 내년부터는 1.8조원, 2017년에는 2.9조원을 부담 2014년의 경우 2013년 대비 약 73%가 증액.

4. 서울시 입장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의 보완대책 검토: 자원분담

- 보완사항: 국고부담을 늘리거나 지자체 부담을 폐지
- 이유
- 📖 열악한 지방재정: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1.1%로, 1991년 이후 가장 낮음.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44개 중 51.2%인 125개
- 📖 기초연금의 국가사무로서의 성격
- 📖 해외사례: 기초연금의 유형과 상관없이 재원을 지방비로 조달하는 사례는 없음.

4. 서울시 입장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의 보완대책 검토: 관리통합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관리·운영
- 이유
 -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력
 - ☞ 캐나다와 일본 같이 국가가 공적연금을 두 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을 통합하여 운영
 - ☞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액이 국민연금 연금액의 일부와 연계하여 산정
 - ☞ 공단의 전문성과 효율성
 - ☞ 지자체 복지공무원의 업무 경감
- 단계적 추진 방안
 - ☞ 1단계(2014): 지자체는 기초연금 신청접수 및 자산조사, 급여결정 및 지급 중심의 업무를 수행, 공단은 급여 상담, 신청 접수, 수급자 관리 지원 등 업무
 - ☞ 2단계: 지자체는 신청·접수, 자산조사 및 예탁금 예탁 등의 기초적인 업무. 공단은 신청·접수 및 급여결정·지급 이후 단계의 업무(사후관리 및 부당이득 환수 등)

□ 감사합니다